

# 청룡동 오펠리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1. 공급개요 및 일정

- 현장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45-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총 114세대 및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정세대수 : 총 114세대 중 11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 ■ 공급대상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1	63.8300A	63A	63.8300	14.7755	78.6055	12.0297	90.6352	14.7416
2	63.8000B	63B	63.8000	15.0408	78.8408	12.0239	90.8647	14.7347
3	51.2800C	51C	51.2800	11.8479	63.1279	9.6644	72.7923	11.8432
4	63.8000D	63D	63.8000	14.5308	78.3308	12.0239	90.3547	14.7347
5	63.1000E	63E	63.1000	14.8822	77.9822	11.8920	89.8742	14.5730
6	52.3400F	52F	52.3400	13.4823	65.8223	9.8642	75.6865	12.0880
7	52.3400G	52G	52.3400	13.4818	65.8218	9.8655	75.6873	12.0886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대상 세대수 : 11세대

구 분		63A	63B	51C	63D	63E	52F	52G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1	0	0	5
	장애인	1	1	1	1	1	1	0	6
계		2	2	2	2	2	1	0	11

## ■ 공급금액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되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7.03.(금)	전본주택,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전본주택 개관	2020.07.03.(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48-13번지 2층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0.07.13.(월)	청약홈(www.applyhome.co.kr) / 08:00~17:30
당첨자 발표	2020.07.21.(화)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전본주택 개제, 스마트폰앱“청약홈”
계약 기간	2020.08.03.(월)~08.05(수)	당사 전본주택

※모집공고일자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기간추천 특별공급 사항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03.)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li> <li>-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전혼자녀 등)</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세대주 및 세대원 중)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해당되는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li> <li>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함)</li> </ol>
--

■ 행정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한국감정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만일 소명 불가시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후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해당 신청일에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3. 신청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 불가함.

- 본인(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추가)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때 구비서류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등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당사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1통 추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특별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특별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장

#### 4.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제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48-13번지 2층

■ 전화번호 : 1833-8005

■ 홈페이지 : <http://www.orpheliu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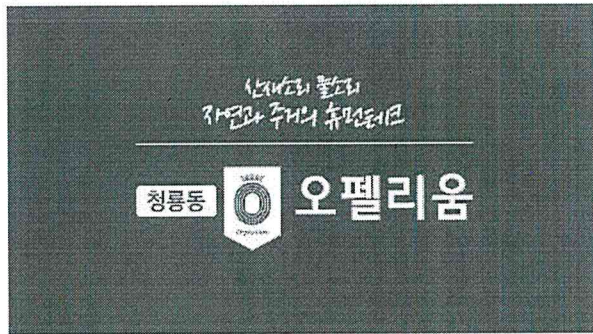
※ 본 공고상의 모집공고일자, 홈페이지 주소 등 일부 내용은 자자체의 승인과정에서의 보정, 보완, 조건부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일간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 게재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상품참고자료

■ 사업개요

사업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45-2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지역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677.7000㎡		(507.50평)
건축면적	923.1800㎡		(279.26평)
연면적	지상	8,903.0400㎡	(2,693.17평)
	지하	1,354.88㎡	(409.85평)
	합계	10,257.9200㎡	(3,103.02평)
건폐율/용적률	55.03%/ 530.67%		
주차대수	총 132대(세대당 1.15대)		
조경면적	330.05㎡ / 15.03%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2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위치도

건본주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48-13번지 2층

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45-2번지

